

12.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4월 12일
- 발 의 자 : 박우근 의원, 강민구 의원, 김대현 의원, 김태원 의원, 송영헌 의원, 이만규 의원, 이시복 의원, 이영애 의원, 임태상 의원, 윤영애 의원, 홍인표 의원, 황순자 의원
-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6일
- 상정일자 : 제2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문화복지위원회(2019년 4월 29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박우근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문 내 인용근거법령이 삭제 또는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,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7조제2항)
-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

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.(안 제7조의2)

-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통합·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.
(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, 제11조~제16조 삭제)
-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함.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3조제1항은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법 ‘제23조’에서 ‘제22조제1항’으로, 안 제5조제1항은 「아동복지법」 제24조 및 제25조에 의거’에서 ‘법 제45조에 따라’로 법률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,
- 안 제7조제2항은 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,
교육담당 기관을 ‘아동보호전문기관’과 ‘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’ 등으로 확대하였음.
- 안 제7조2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·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,
- 안 제10조에서는 ‘아동학대예방위원회’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‘아동복지심의위원회’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고, 기존의 위원회 관련 조항(제11조~제16조) 등은 삭제하였음.

- **안 제11조**는 「아동복지법」 제65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- **부칙 제2조**는 「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」의 심의 사항에 「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음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개정안은 2010.9.30. 제정 이후 근거법령인 「아동복지법」이 본 조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4차례 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비밀 유지 의무 등 법률에 규정된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발의한 것이 되겠음.
- 또한 기존 운영하고 있던 ‘아동학대예방위원회’는 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통·폐합하도록 함으로써, ‘아동복지심의위원회’에서 통합해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음.
 - ※ 「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」 (2014. 12. 22. 제정)
-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(2016년/1,100건, 2017년/1,739건, 2018년/1,754건), 아동학대 행위자 또한 부모, 보육교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신고 의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.

- 다만,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전국 실태조사 외 대구 지역의 실태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, 대구시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원인과 유형은 물론,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,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하겠음.
- 또한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필요가 있겠으며, 특히 학대 피해아동 관련 개인정보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부모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함.	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음.
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즉각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함.	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신고 접수 시 즉각적으로 관리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